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09. 7. 31.(금)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송도균 부위원장
이경자 위 원
이병기 위 원
형태근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에 관한 건 (2009-34-159).....비공개

2)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관한 건 (2009-34-160)

○ 김재영 디지털방송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09. 4. 22. 「디지털전환특별법」 일부 개정(공포)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의 의무를 '자료제출'로 구체화(안 제10조의2 제1항)
 - 고화질 디지털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에 관한 자료
 -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자료(이 경우 계획에는 디지털방송국 구축, 대국민 홍보, 그 밖에 시청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
 -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자료
- 지상파방송사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에 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규정(안 제10조의2 제2항)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시정조치
 - 위 시정조치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이내의 방송국 운용제한 또는 정지
 - 제2호에 따른 방송국 운용제한 또는 정지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송국 개설 허가 취소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인가에 관한 건 (2009-34-161)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5조 제1항(변경허가)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제1항(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따라 (주)씨제이헬로비전의 4개 계열사 합병 신청 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 합병 법인 : (주)씨제이헬로비전

주요사업	사업구역
기간통신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서울 양천구, 인천 부평구, 계양구, 부산 중구, 동구 등

○ 피합병 법인 : (주)씨제이헬로비전 영남·충남·중앙·금정방송

구분	(주)씨제이헬로비전 영남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충남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중앙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금정방송
주요 사업	기간통신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기간통신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기간통신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사업 권역	경북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봉화군, 청송군, 영양군	충남 서산시, 당진군, 태안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부산시 진구	부산 금정구

4) 종합유선방송 재허가에 관한 건 (2009-34-162)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2009. 7. 24. 제32차 회의에서 재허가가 보류된 (주)아름방송네트워크, (주)신라케이블방송의 재허가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 회의에 재상정 하기로 함.

5)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및 방송국 허가에 관한 건 (2009-34-163)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관악공동체라디오(관악 FM) 등 8개 시범사업자가 신청한 공동체라디오방송 선정 및 방송국 허가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회의에 재상정 하기로 함.

사. 보고사항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사항

-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09년 방송법 입법계획('09. 3. 24 : 위원회 보고)에 따라 마련된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개선, 직접 사용 채널의 운용 범위 규정, 신규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부과 범위 마련 등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함.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09. 8. 6.(목)에 개최하기로 함.(시간은 추후 결정)

6. 폐 회 (18:40)

※ 12:10 정회, 17:00 속개, 17시 58분 정회, 18시 15분 속개